

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

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,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6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3. 17.

예 천 군 수



1. 목 적

-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명 라온유치원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.

2. 지정고시 내용

- 어린이보호구역 지정

시설명	소재지	보호구역 지정구간	연장
호명 라온유치원	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210-1	-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210-1번지 일원	L=250m

※붙임 :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 참조

3. 문 의 처 : 예천군청 건설교통과(054-650-6569)

(붙임 1)

□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위치도(호명 라온유치원)

